

운전학원종합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입자격

- 운전학원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및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주요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 계약	운전학원시설조항 - 시설배상책임	운전학원시설조항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운전학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기본 계약	운전학원시설조항 -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운전학원 구내에서 운전학원구내수강자조항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이나 기능검정을 위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용 또는 기능검정용 구내자동차(이하 「구내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 중 운전학원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 및 기능 검정을 위하여 운전중인 구내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선택 계약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선택 계약	교통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전체 보장 내용 및 상세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험상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배상책임보험금(대인)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과 동일함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각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경우 이 계약에 따른 보상액은 각각의 책임한

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보험금(대물)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물배상 보험금지급기준의 수리 비용, 교환가액항목의 지급기준과 동일함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각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경우 이 계약에 따른 보상액은 각각의 책임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

- 손해액은 보험가액 및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구내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구내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구내자동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구내자동차를 고칠 때에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은 그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해 입원일당

-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 수는 1회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적용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해당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하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 예시

- 보 험 기 간 : 1년
- 보 장 내 용 : 운전학원시설조항 - 시설배상책임, 구내자동차손해
- 목적물 상세 : 전문학원 1,000㎡, 수강자수 12명

보장명		보험가입금액	영업보험료
기본계약	운전학원시설조항- 시설배상책임(대인)	대인 1인당 1.6억원	280,300원
		대인 1사고당 2억원	
	운전학원시설조항- 시설배상책임(대물)	대물 1사고당 2천만원	
	운전학원시설조항- 시설책임구내자동차 손해	1사고당 7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		
계			280,300원

※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5. 기타 알아 두실 사항

Q)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점 및 보상과의 관계는?

A)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설정하며 계약상의 보상한도가 됩니다. 보험가액은 가입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말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가로 결정하며, 법적인 보상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만일 작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